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44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만희 · 안상훈 · 서천호
김기웅 · 이종배 · 이성권
박준태 · 엄태영 · 조은희
권영진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용하는 자는 그”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인사관리 담당자”라 한다)은 사용자”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0조의2”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교직원”을 “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교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제10조(직장 보장) ----- <u>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인사관리 담당자”라 한다)은 사용자-----</u> -----.</p> |
| <p>제15조(벌칙) ① ~ ⑦ (생략)</p> <p>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u>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u>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사용자 ----- ----- ----- -----.</p> |
| <p>⑨ ~ ⑫ (생략)</p> <p>제15조의2(과태료) ① <u>제10조의2</u>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p> | <p>⑨ ~ ⑫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과태료) ① <u>제10조 및 제10조의2</u>----- ----- -----</p> |

| | |
|---|--|
| <p>불리한 처우를 한 <u>교직원</u>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p> | <p>-----<u>인사관리</u> <u>담당자 또는 교직원</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
|---|--|